

“일상이 공포가 되는 교제폭력”

# 피해자와 함께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정책 간담회

2024. 7. 7. (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5

주최 여성의원당 정책위원회

문의 [policy@womensparty.kr](mailto:policy@womensparty.kr)

시간	내용	발표자
2:00 ~ 2:05	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	유지혜 여성의원당 대변인
2:05 ~ 2:15	개회사	박진숙 여성의원당 비상대책위원장
2:15 ~ 2:45	사례 발표	거제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님 유가족
		바리깡 폭행남 교제폭력사건 피해자 가족
		인천 스토킹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2:45 ~ 2:55	현행 데이트폭력 피해 지원 체계의 한계와 대안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2:55 ~ 3:05	거제 사건으로 미뤄본 친밀한 사이의 여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	정재훈 여성의원당 경상남도당 비상대책위원장
3:05 ~ 3:15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위한 해외 입법례 공유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3:15 ~ 3:25	피해자 중심의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 제안: 사전·사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중심으로	이예은 여성의원당 정책위원회 의장
3:25 ~ 3:30	폐회	유지혜 여성의원당 대변인

###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예은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제폭력을 접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담합니다. 깊은 책임감과 고통,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교제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다짐으로 정책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발제에 함께해주신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님,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님, 그리고 경남도당 정재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용기 내 목소리 내주신 피해 유가족과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제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별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 간의 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가 발생할 때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며, 교제폭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법제화할 때 개념의 모호성, 형사법의 체계 정합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실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피해자의 사전 및 사후 보호조치입니다. 교제폭력은 일견 법정형이 가벼운 협박 범죄 등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비약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맞기 전에, 죽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고려해 범죄 개념을 구성한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을 고안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이나 형법상 폭행 및 상해를 중심으로 피해 정도와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세계경찰청장 협회(IACP)가 2018년 발표한 '친밀 관계 폭력 대응 정책 및 교육 가이드라인' 과 가정폭력 보고서(백서)의 체크리스트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목 졸림'에 대해 세밀하게 묻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로 외상이 심하지 않아 피해의 파악은 어렵지만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목 졸림' 경험과 그로 인한 경미한 피해를 중한 위험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쌍방폭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주 가해자를 식별하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전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사후 보호조치까지 포섭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전 보호조치와 달리 아직 논의되지 않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위험성과 관계없는 사후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합니다. 폭행 직후에는 부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에 각 신체 부상 사진을 찍어서 확보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를 배정하여 일정 기간 연락을 취해 후속 피해를 조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위험성을 다각도로 세밀하게 파악한 후, 후속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최대 30일 밀착 경호 지원 등의 사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는 2023년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에서 실제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진행된 바가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80%가 불안감 완화와 추가 범행 저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에 지자체의 책무 조항을 포함하여, 사후 보호조치 시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개선안은 여성의당에서 오랜 기간 교제 폭력 사건을 추적하고, 피해 유가족 및 가족들과 소통하며,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되는 사안이 교제폭력처벌법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의당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진숙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참담한 심정 한편으로, 하루빨리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서 한 사람의 피해라도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교제폭력으로 인해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동료 시민의 죽음에 비통해하고 불안해하는 동안, 정작 문제를 해결할 힘과 그래야만 하는 책임을 지닌 정부와 국회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고 제도를 보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거대 야당 역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가부에서 교제폭력 대책을 내놓았으나 수년간 이어진 논의를 반복하거나 부실한 대응책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여성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촘촘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거제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고 이효정 님의 유가족분들, 바리깡 폭행남 교제폭력사건 피해자 가족분들, 인천 스토킹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제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싸움을 이어 나가고 계신 피해자의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정책위원회에서 숨 가쁘게 달려주시고 여러 단체에서 협력해 주신 덕에 이렇게 피해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패널로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신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님, 정재흔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장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이경하 변호사님,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여성의당은 교제폭력처벌법이 더 이상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고 입법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피해자와 소통하며 분주히 일하겠습니다. 교제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까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오늘 유가족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모여 교제폭력 대책과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논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자극적인 일회성 기삿거리로 소비되지 않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당**

<b>인사말</b>	2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b>축사</b>	4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	
<b>사례 발표</b>	8
거제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님 유가족 바리깡 폭행남 교제폭력사건 피해자 가족 인천 스토킹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b>현행 데이트폭력 피해 지원 체계의 한계와 대안</b>	9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b>거제 사건으로 미뤄본 친밀한 사이의 여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b>	10
정재훈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비상대책위원장	
<b>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위한 해외 입법례 공유</b>	12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b>피해자 중심의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 마련의 필요성: 사전·사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중심으로</b>	22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 사례 발표

거제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님 유가족  
바리깡 폭행남 교제폭력사건 피해자 가족  
인천 스토킹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 현행 데이트폭력 피해 지원 체계의 한계와 대안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거제 사건으로 미뤄본 친밀한 사이의 여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



정재흔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비상대책위원장

**여성의당**

#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위한 해외 입법례 공유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1. 실효적 처벌을 위한 개선방안

### 가. 현황 및 문제점

교제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동선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위협하기 용이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가해자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범행 강도·빈도가 심화되어 살인 등 추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sup>1</sup>. 하지만 교제폭력은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죄 등의 폭력범죄로 의율되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폭행치사, 상해치사죄로 의율되어 살인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sup>2</sup>.

대검찰청은 2023. 3. 8. 교제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범죄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 성폭력, 보복범죄, 살인 등 중대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교제폭력 사건들은 대부분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분석되므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정하고, 그 중 범죄에 더 취약한 ‘체포·감금’과 ‘주거침입’이 결합된 경우는 별도 가중인자로 고려”하고, “결별 후 비로소 폭력성향이 표출되는 경우 등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거의 범행 시점을 불문하고 폭력범죄 전력을 가중인자로 고려”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sup>3</sup>. 하지만 2023년 기준 교제폭력 가해자가 구속된 건수는 2.22%에 불과하였습니다<sup>4</sup>. 결국, 대검찰청의 교제폭력 처벌 강화 지침만으로는 교제폭력이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력범죄로 의율되는 것에서 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국내 입법모델·해외 입법례 및 시사점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대)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한국여성변호사회, 교제폭력 초기 선제적 조치도입 등 신속한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성명문, 2024. 5. 10, <http://www.kwla.or.kr/sub0401/8370>

2 서울신문, “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2022. 1. 18.

3 대검찰청, 2023. 3. 8. 보도자료 ‘교제폭력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 2023. 3. 8.

4 뉴스핌, “검거 인원 늘지만 구속은 2%” 교제폭력 범죄 처벌 한계 개선 필요, 2024. 6. 12.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13. 경 소위 '칠곡 계모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피해아동은 오랜 기간 가해자에게 폭행당하다가 사망하였고, 가해자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sup>5</sup>. 가해자가 장기간 피해아동을 일상적으로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2014. 1. 28.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치사죄'를 신설하였고, 그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여 살인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신설하여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설정하여 형법상의 중상해죄의 법정형보다 상향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신체적 손상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폭행죄는 경범죄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sup>6</sup>,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곧 폭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중범죄인 '통제 범죄'로 의율되어 신체적 손상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최대 5년 형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sup>8</sup>.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신체적 손상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폭행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sup>9</sup> (전) 배우자, (전) 파트너, 성적인 성격을 띤 관계를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한 협박, 폭행 등의 학대 범죄는 신체적 손상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sup>10</sup>.

국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2024. 3. 25. 의결하였는데, 해당 양형

5 KBS, "칠곡·울산 '계모 상해치사' 징역 10년·15년", 2014. 4. 12.

6 Sentencing Council,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utlines/assault/>

7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 ㉠-폭행",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3/view.do?seq=79402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3/view.do?seq=79402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2011. 3. 29.

8 허민숙,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4. 6. 4.

9 NSW Government legislation, <https://legislation.nsw.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1900-040#sec.61>

10 NSW Government legislation, <https://legislation.nsw.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1900-040#sec.61>

기준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맥락을 잘 반영한 부분들은 교제폭력범죄의 양형기준으로 참조해 볼 만 합니다<sup>1112</sup>.

#### 다. 입법제언: 법정형 상향 및 양형기준 신설

교제폭력은 가해자의 열등감, 분노, 집착 등의 보복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중국에는 교제살인이라는 강력 범죄로 진화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경미한 범죄더라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증상으로 파악하여 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개별적인 일반 폭력범죄로 다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폭력 사건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상해치사죄의 경우 가해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교제폭력을 지속·반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향이 뚜렷하여 그 죄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치사, 상해치사죄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해외 입법례에서 이러한 교제폭력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입법 보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입법안을 제안합니다.<sup>13</sup>

#### 교제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제폭력”이란 서로 합의하여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제폭력범죄”란 교제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제2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및 제275조(유기 등 치사상)제1항(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제1항(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11 한겨레, “대법,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5년’”, 2024. 1. 19.

12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2024. 7. 1. 시행

13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022. 7. 15.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 “교제폭력행위자”란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4. “피해자”란 교제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제폭력살해·치사) ①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교제폭력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제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입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폭행, 상해(치사)죄의 양형 가중요소로서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는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sup>14</sup>. 그리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로서 ‘피해자의 애정, 신뢰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 상당합니다<sup>15</sup>.

## 2. 반의사불벌죄의 폐단

### 가. 현황 및 문제점

교제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형법상 폭행, 협박죄로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친밀감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sup>16</sup>.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서 ‘배우자/파트너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46.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sup>17</sup>.

14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2024. 7. 1. 시행.

15 서울신문, “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2022. 1. 18.

16 헬스조선, “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국민의힘, “방지방 입법화” 촉구”, 2024. 6. 21.

17 허민숙, 위의 논문, 2024, 6면.



피해자의 의사 존중은 피해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범죄에서 피해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가해자의 심리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보복범죄, 2차 피해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문제점을 초래합니다<sup>18</sup>.

#### 나. 국내 입법모델·해외 입법례 및 시사점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체포, 기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주를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해 포괄하여 교제폭력 피해자 역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sup>19</sup>.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체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체포해야 합니다<sup>20</sup>. 그리고 여성폭력방지법에 검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의무기소(NO-DROP)규정을 도입하였고, 이 정책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참여를 강제하고 가정폭력 사건 기각률을 감소시켰습니다<sup>21</sup>. 여성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 기소, 형사 처벌 등 법집행 전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으로 국내 입법례와는 상반된 기초를 보입니다. 이러한 입법배경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체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22</sup>.

세계 최대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인 세계경찰청장협회(IACP)는 '가정폭력 개념과 연구보고서'에서 '피해자 행동의 특징'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며 '피해자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해자에 대한 애착 등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sup>23</sup>.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체포, 처벌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경찰관은 전체 대응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정폭력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만한 어떠한 발언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8 신나래,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 정책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여성연구」, 2022, 41~42면, 46면

19 일요서울, "'데이트 폭력' 10년 새 92% 증가... 구속 사례 2% 못 미쳐", 2024. 6. 11.

20 허민숙,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

21 김은경, 김은경, 「현행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구조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47면

22 신나래, 위의 논문(註 62), 37~40면

23 IACP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 "Domestic Violence Concepts and Issues Paper", 2018. 3, 3p

## 다. 입법제언: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교제폭력처벌법<sup>24</su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제폭력”이란 서로 합의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제폭력범죄”란 교제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제2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제20조(교제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② 제2조제2호 가목, 라목 및 사목의 교제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및 제31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쌍방폭행 처리로 인한 폐단

### 가. 현황 및 문제점

수사기관이 주 가해자를 식별하려는 노력 없이 기계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고, 차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교제폭력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된 상태임에도 신고를 주저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sup>25</sup>.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해 18개 지부에서 진행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상담 5332건 중 258건(4.8%)의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며 피해자를 신고 혹은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26</sup>.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월 1일 일선 수사기관에 “쌍방폭행 사안이라도 실체를 명확히 밝혀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sup>27</sup>.

### 나. 해외 입법례 및 시사점

미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의무 체포 및 기소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가장 우려되었던 부작용은, 수사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상호폭력’ 혹은 ‘쌍방폭행’으로 단정하거나 인식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를 체포하는 일이었고,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각 주에서 주 가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sup>28</sup>. 뉴욕주는 경찰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 공격자(primary aggressor)”만을 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 공격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양방이 모두 폭력을 사용한 경우라면 어느 일방이 자기방어(self-defense)를 위해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밖

24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022. 7. 15.

25 한겨레, 교제폭력 신고해도 경찰 ‘쌍방폭행’ 처리 관행...“더 큰 범죄 불러”, 2024. 6. 18.

26 한겨레, 위 기사, 2024. 6. 18.

27 한겨레, “교제폭력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가해자 협박 여부 살피겠다”, 2024. 7. 2.

28 허민숙,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2021. 9. 16.

에 없었는지를 분별하여 방어폭력을 사용한 자를 가해자로 오인하여 체포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sup>29</sup>. 그리고 알라바마 주에서는 둘 이상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거나 쌍방이 모두 부상이 있는 경우, 경찰은 누가 주 공격자인지 판단하여야 하고 한 사람이 주 공격자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가정폭력에 연루된 다른 사람은 체포할 필요가 없습니다<sup>30</sup>. 알래스카 주에서도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누가 주도적인 물리적 가해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여야 합니다<sup>31</sup>.

세계 최대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인 세계경찰청장협회(IACP)는 '친밀 관계 폭력 대응 정책 및 교육 가이드라인'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사람 가운데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하는 '주 가해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sup>32</sup>. 나아가, 위 가이드라인은 "경찰관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누가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인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는 가능한 한 우세한 가해자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쌍방이 동등한 폭력을 사용했고 정당방위가 없어 우세한 가해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 당사자를 모두 체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경우, 반드시 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sup>33</sup>.

#### 다. 입법제언: 주가해자 식별 등을 위한 수사 매뉴얼 마련

수사기관이 교제폭력을 형식적으로 쌍방 폭력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 가해자 식별을 위한 수사 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우 주 가해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해당 체크리스트는 IACP에서 운영하는 22개의 체크리스트를 입법 모델로 참조<sup>34</sup>해볼 수 있겠

29 허민숙, 위 논문, 6면.

30 유지웅, "가정폭력 긴급입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대응 실효성 제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7, 46면.

31 유지웅, 위 논문, 46면.

32 한겨레, 위 기사, 2024. 6. 18.

33 IAC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PONSE POLICY AND TRAINING CONTENT GUIDELINES", 24P

34 경찰관은 철저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공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가장 심각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결정하려고 할 때 경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관계에서 위협과 협박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파트너를 고립시키는가?
3. 정서적 확대(비하하는 이름, 굴욕적인 발언 등)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4. 피해자 및/또는 용의자는 축소, 비난 및 부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5. 누가 관계를 맺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합니까?
6. 누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성적 행위를 사용했는가?
7. 누가 돈과 재정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8. 누가 강압과 위협을 사용합니까?
9. 협박을 가했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10. 어느 한쪽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까?
11. 전제 기록은 거주지에 대한 서비스 요청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12. 당사자 간에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역사가 있습니까?
13. 당사자 간에 물리적 크기 차이가 있습니까?
14. 당사자 중 일방이 그들에 대한 보호 명령 또는 그들에 대한 보호 명령 이력이 있습니까? 15. 누가 상대방을 더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16. 당사자가 입은 부상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7. 어느 한쪽이 정당방위를 하였습니까?
18. 앞으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19. 어느 당사자가 총기 또는 기타 무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20. 당사자는 어떤 유형의 부상을 입었습니까? 그들은 본질적으로 공격적입니까 아니면 방어적입니까?
21. 한쪽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까?
22. 증인들의 증거가 있습니까?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한 철저한 조사 후, 경찰관이 실제로 양 당사자가 동등한 폭력을 사용했고, 정당방위가 없었으며, 주된 가해자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은 상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이 양 당사자를 체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 경찰관은 각 체포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각 체포의 가능한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제폭력 신고를 '쌍방 폭행'으로 의율하여 '쌍방 처벌불원의사'로 종결시키는 경우, 22개의 체크리스트 결과를 첨부하여 체크리스트 결과 실질적인 주 가해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실질적인 주 가해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취하였는지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의당**

**피해자 중심의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 마련의 필요성:  
사전·사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중심으로**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 피해자 중심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 마련의 필요성 사전·사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함께하는 교제폭력 정책간담회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여성의당

## 01.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 01 '교제폭력범죄'의 특성

1. 일견 법정형이 가벼운 협박 범죄 등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비약적으로 '진화', '발전'. 즉, 전조증상을 가볍게 무시하면 안 되며, 후속 범죄를 막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함
2. 친밀한 관계 및 성별 위계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 동반

여성의당

## 01.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 02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형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교제폭력범죄 유형과 피해자 보호조치

1. 가정폭력처벌법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2. 스토킹 외에도 남성-여성 간 성별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3.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

여성의당

##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 03 명명의 필요성

1. 형사정책 대상에서의 소외
2. 정책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보호 법제화 마련

여성인당

##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및 문제점

### 01 폭력 신고 시, 폭력 피해를 가시적인 신체적 외상 여부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정의하여 위험성을 축소

III. 긴급임시조치 결정문항		※ 1개만 해당할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조사 방법	조사 내용	해당함	
경찰관 확인·판단	1.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뚜렷한 외상(상해)이 확인되거나 가해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특수폭행·협박)한 것이 확인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가해자가 출입문 개방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면한 결과 가정폭력 범죄 피해가 확인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파면, 짐기류의 심각한 파손 등 주변 잔여물을 볼 때 가정폭력 범죄가 의심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범죄 피해가 확인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성인당

##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및 문제점

II. 사건처리 참고기준		해당함
범죄 유형		
1. 상해(타박상, 골절, 혈흔, 응급실 내원 등)		<input type="checkbox"/>
2. 특수폭행·협박(흉기사용)		<input type="checkbox"/>
3. 상습폭행·협박(2회 이상 폭행·협박)		<input type="checkbox"/>
4. 손괴(물건 파손)		<input type="checkbox"/>
5.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격리·접근금지) 위반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위반죄 해당		<input type="checkbox"/>
6. 일반폭행·협박(준속폭행·협박 포함)		<input type="checkbox"/>
7. 긴급임시조치(격리·접근금지) 위반		<input type="checkbox"/>
<b>&lt;범죄 유형에 따른 조치 기준&gt;</b> ① 1~5번 → 체포 임의동행 발생보고 → 6번 → 발생보고(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에만 원장중결) → 7번 → 퇴거 조치 후 위반자 통보서 작성하여 여성수서팀 송부		

IV. 긴급임시조치 평가 기준		※ 총점 5점 이상인 경우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구분	유형	조사 내용	예 (1점)	아니오 (0점)	확인됨 (0.5점)
경찰관 확인·판단	강압에 대한 저항	1. 가해자가 현장에서 중대한 경찰관을 상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협성 주장	2. 가해자가 가정폭력 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아말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고전역	3.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대상 질문	일반적 유력성	4. 가해자가 가정구성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구적 위협사유	5. 가해자가 일주일에 술을 주 3회 이상 마시거나 기타 악랄을 과도하게 사용하나요? * 경찰으로 의뢰(타박, 손괴, 등), 불화, 연립(문드, 가스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살양시	6. 가해자가 선명성 담을 하며 죽겠다고 말하거나 죽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배성향	7. 가해자가 선생님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해자에 대한 공포	8. 가해자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간담	9. 가해자만의 문제로 뿐이나 마음에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총 점	( ) 점		

여성인당



##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및 문제점

### 02 피해자 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한 보호조치 여부 결정

1.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이 가해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보호조치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2. 진정한 '피해자 중심'은 피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위험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리는 것이어야 함

여성인턴

## 교제폭력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 평가 항목 보완

### 01 다양한 폭력 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 폭력에 대한 가시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증상, 경제적, 정서적 학대 (통제 등)을 고려한 평가 문항  
\*세계경찰청장협회(IACP)가 2018년 발표한 '친밀 관계 폭력 대응 정책 및 교육 가이드라인' 과 가정폭력 보고서(백서) 준용

여성인턴

IACP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 "Domestic Violence Concepts and Issues Paper", 2018. 3

- Changes in the voice ranging from hoarseness to complete voice loss (if unsure if this is present, officers should ask victims if their voice is "normal" to them)
- Wheezing
- Difficulty swallowing
- Difficulty breathing
- Scratches, abrasions, or discoloration of the neck
- Impressions in the skin, which might indicate use of a ligature or similar object
- Swelling of the tongue
- Petechiae (ruptured capillaries in the eyes, under the eyelids, on the face or neck)
- Defensive fingernail marks on victim's face, neck, or chest.<sup>14</sup>
- At any time were his (or her) hands on your neck or throat?
- How long do you think his (or her) hands were on your neck or throat?
- Do you have any current pain or discomfort? Where and to what extent?
- Have you noticed any change in your voice or speech?
- Are you having difficulty speaking or breathing?
- Do you have any pre-existing injuries?
- Are you pregnant or is there a possibility of you being pregnant?
- Do you have any injuries that may be hidden by clothing?
- Did you feel faint, dizzy, or like you were going to pass out? Do you feel faint or dizzy now?
- Did you lose control of your bladder or bowels or did you vomit?

'목 졸림' 행위에 대한 상세한 진단:  
예) 목소리 변화 여부, 삼킴의 어려움, 상대의 손이 목에 머문 시간 등

여성인턴

IACP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 "Intimidate Partner Violence Response Policy and Training Content Guidelines", 2018

**Strangulation**

**Non-visible injuries**

- Difficulty breathing/unable to breathe, hyperventilation
- Raspy voice, hoarse voice, coughing, unable to speak
- Trouble swallowing, painful swallowing
- Neck pain
- Nausea, vomiting
- Involuntary urination and/or defecation
- Fainting/light-headedness
- Headaches, head "rush", ears ringing
- Disorientation, memory loss, "spaced out"

**Visible injuries**

- Petechiae (pinpoint red spots about the area of constriction)
- Hemorrhaging, bruising
- Scratch marks, scrapes, abrasions
- Bloody nose, broken nose
- Fingernail impressions
- Swelling of neck or face
- Pulled/missing hair, bumps on head
- Skull fracture/head injuries
- Swollen tongue, swollen lips

'목 졸림' 행위에 대한 상세한 진단

**여성상담**

## 위험도 평가 근거 기록 및 보고 의무화

02

### 낮은 위험도로 인한 사건 접수, 보호조치 등 미결정 시 상세 보고서 작성 의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될 시, 담당자의 모든 문항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 기술과 피해자 사진을 동봉한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여성상담**

## 쌍방폭행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가해자 식별

03

### 주가해자 식별 체크리스트

금전, 생활, 정신적 통제의 여부 외에도 '두 당사자 간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physical size difference)/ 누가 상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가?' (appear) 와 같은 외형상 직관적으로 약자를 가릴 수 있는 문항 포함

**여성상담**

## 사후 보호조치 의무화

### 01 사후 모니터링 도입

- 폭행 직후에는 부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에 각 신체 부상 사진을 찍어서 확보하고, 보고서 작성
- 후속 범죄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담당자를 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follow-up contact 실시



## 사후 보호조치 의무화

### 02 고위험군에 신고 직후 최소 30일 밀착 경호 지원

-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98명에게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최대 28일 밀착 경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1/2024011100141.html>)



## 전문가 인력 및 예산 부족

01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교제폭력처벌법'법안 통과

02 지자체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강화

03 여성가족부 예산 확충

근거 조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여성의당**